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의안 번호	228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. 11. 21

제안자 : 서울특별시의회
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

1. 제안경위

- 이 건의안은 김정태 위원외 12인이 서면으로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(2017.11.21)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임.

2. 주문

-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심의위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, 서면제출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.

3. 제안이유

- 집행부를 견제·감시하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

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시 서면회의록 공개와 심의위원 실명 공개를 허용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책임감있는 발언태도를 유도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기타사항 : 없음

5. 이송처 : 국회, 국토교통부

6. 첨부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- 현행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(서울시의 경우 심의 종결안건은 30일, 보류안건은 3개월)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열람의 방법으로만 공개가 가능하되,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서울시의 경우, 그간 市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,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('12.3월) 하여 대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여전히 회의록에는 발언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못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은 첫째,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, 둘째,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이러한 상위법령의 규정은 심의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, 심의위원이 경솔한 주장이나 비상식적 발언을 고수할 경우 자칫

위원회 심의를 지체시키거나 심의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이에 서울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·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만이라도 심의위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, 감사원·국회에 제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서면제출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.

2017. 11. 21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

【붙임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

〈참고 1〉 관련 법령

〈참고 2〉 회의록 공개방법 관련 법령해석 등

【붙임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3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및 감사를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공개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“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”란 “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”를 말한다.

〈신구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113조의3(회의록의 공개) ① ~ ③ (생략) <u>〈신 설〉</u>	제113조의3(회의록의 공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및 감사를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공개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“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”란 “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”를 말한다.</u>

〈참고 1〉

관 련 법 령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113조의2(회의록의 공개)

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·장소·안건·내용·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13조의3(회의록의 공개)

-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,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.
-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.
-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“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”란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〈참고 2〉

회의록 공개방법 관련 법령해석 등

○ 법제처 법령해석 ('11.10.9)

- 질의내용 : 감사원 요구시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 가능한지
- 답변내용 : 감사원 요구시 서면제출 가능

(※ 법령해석례 11-0408)

○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('12.12.14)

- 질의내용 : 국회에서 안전심의, 국정감사,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또는 지방의회에서 요구시 회의록 파일로 제출 가능한지
- 답변내용 : 국회는 서면제출 가능하나 지방의회는 불가

○ 법제처 법령해석 ('13.5.13)

- 질의내용 : 국회에서 안전심의, 국정감사,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요구하거나,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지방의회가 안전심의나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회의록을 파일로 제출 가능한지
- 답변내용 : 지방의회는 서면제출 불가, 국회는 서면제출 가능

(※ 법령해석례 13-0131)